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30(금) 평창군수(경제체육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11. 20(금)

다. 상정일자 : 2015. 12. 7(월) 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및 과도한 권리 제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부과 및 과도한 권리제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달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전액을 16일 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달 사용료의 반액을 환급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위임”을 “징수를 위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